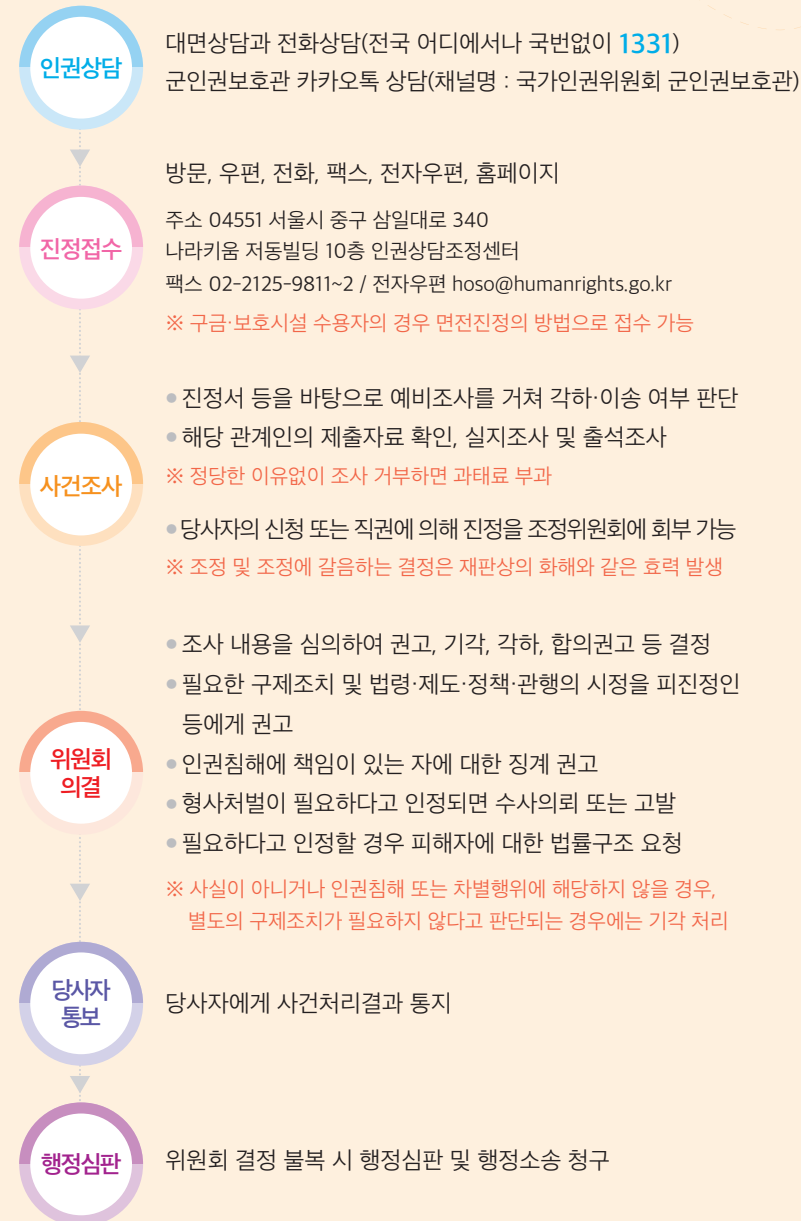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진정 접수 및 처리 절차



인권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입구 (도보 5분) / 을지로 지하쇼핑센터 을지로2가 5번 출입구 (도보1분), 4호선 명동역 10번 출입구 (도보 10분)

버스 • **간선** 100, 105, 152, 202, 261, 470, 472, 501, 741, N30(심야), N37(심야)
• **지선** 7017, 7021
• **광역·직행** 1150, 3201, 4108, 5000, 5005, 5007, 5500-2, 8100, 8800, 9000, 9000-1, 9003, 9200, 9300, 9401, M4101, M4102, M4108, M4130, M4137, M5107, M5121



주소 04551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홍보협력과
전화 02)2125-9870~5 / 국번없이 1331 팩스 02)2125-0920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전자우편 public@humanrights.go.kr

• **부산인권사무소**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회관 8층 Tel.051)710-9710~6
• **광주인권사무소**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 5층 Tel.062)710-9710~6
• **대구인권사무소**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5층 Tel.053)212-7000~6
• **대전인권사무소**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탄방타워 13층 Tel.042)472-9038~45
• **강원인권사무소** 2639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73 4층 Tel.033)813-9930~7
• **제주출장소** 632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제주북합관사 2층 Tel.064)758-6080~2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의거해 설립되었습니다

▶ 파리원칙

-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지위, 구성 등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1991년 '제 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에서 제정된 후,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의 권한을 부여받아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직무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권한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정해져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예산적 자원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국가인권기구는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심사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방식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청문하고 심리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기구입니다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명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인권 전담 국가기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 보호·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독립기구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 국가기구로 업무 수행 및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준사법기구

개별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령, 제도, 관행 등의 개선 권고
기존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와 서로 보완가능

준국제기구

국가의 법·제도 등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및 해외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
국내법상의 기구지만, 국제인권법을 토대로 성립되고
그 이행을 담당하는 기구로서의 국제적인 성격 보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정책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 표명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 표명

조사·구제

-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및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조사·구제
-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성희롱 조사·구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구제
- 군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교육·홍보

-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인권 문화 확산 및 홍보

국내외 협력

- 국내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 교류·협력

